

##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파 주 시 장

###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2. 제정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창업지원 및 경진대회 개최, 관련 기관과의 협력,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8조)
- 라. 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1조)

### 4. 자치법규안 : 별첨

###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20년 4월 5일까지(20일간)
-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우 10932)
  - 전화 : 031-940-4547 / FAX 031-940-452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